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1

발의연월일: 2021. 6. 23.

발 의 자: 송석준 • 태영호 • 김선교

정찬민 • 배준영 • 문정복

김성원 · 소병훈 · 임종성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략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과밀개발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안 제2조).
- 나.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화 협의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생협력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다.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라.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 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곳은 과밀억제권력, 성장 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산학협력시설을 포함. 단, 대학 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 과밀부담, 총량규제, 대규 모개발사업규제, 과역기발설치비용 부담,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 책지역의 행위제한의 적용 예외로 함(안 제20조의5 신설).
- 바. 상생협력지구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 및 국가의 출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 사. 상생협력지구 지정 후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 및 건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상생협력지 구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상생협 력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생협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생협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0조의7 및 제20조의8 신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생협력지구"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상생협력지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대상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 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 지역
- ②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상생협력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생협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3(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과 상생협력방향

- 2. 상생협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3.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사업기간
- 4.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및 시행방법
-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 ③ 시·도지사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 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생협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4(상생협력지구 및 상생협력계획에 대한 심의) 수도권정비위 원회가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운영방향·위치·면적 및 개발사업기간의 적정성
 - 2.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 3.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 등의 의견
 - 4.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정성
 -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상생협력계획의 적정성
 - 6.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 지정 및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의5(상생협력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적용 특례) ① 상생협력지구 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시설이 설치제한. 단, 대학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된다.
- 2. 제11조에 따른 종전 대치에 관한 조치
-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 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 협력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을 수립할 경우에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야 하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

정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0조의6(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 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 ②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상생협력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 3.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4.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상생협력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상생협력계정으로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영하며, 그 밖에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7(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의8(상생협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상 생협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상생협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거나 상생협력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 9.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상생협력지구"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
	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산
	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등 관련 단지를 조성하
	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	
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	
한다.	

- 1. ~ 7. (생 략)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 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신 설>

- 1. ~ 7. (현행과 같음)
- 8. 상생협력지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에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 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상생 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지정 대상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 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 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제8 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

 역
-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 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 여구역주변지역
- 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인접지역
- ②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상생

- 협력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 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 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은 상생협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수도 건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지 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상생협력계획의 수립등) ① 시·도지사는 상생협력지 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생협 력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 이 상생협력지구로 지정된 경 우에는 상생협력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과상생협력방향
- 2. 상생협력지구의 명칭·위치및 면적
- 3.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사업기

간

- 4.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및 시행방법
-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 달에 관한 사항
- 6.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상생협력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상 생협력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 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할 자 를 지정한다.
- ③ 시·도지사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 장·군수·구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생협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상생협력계획의 수 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상생협력지구 및 상생 협력계획에 대한 심의)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심

<신 설>

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u>각</u>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운 영방향·위치·면적 및 개발사 업기간의 적정성
- 2.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미치는 효과
- 3.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 등의 의견
- 4.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정성
- 5.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상생협력계획의 적정성
- 6. 그 밖에 상생협력지구 지정 및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 고 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의5(상생협력지구 지정으로 인한 법적용 특례) ① 상생협력지구에서는 상생협력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신 설>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의 행위제한 및 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시설이 설치제한. 단, 대학의 설치는 서울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 된다.

- 2. 제11조에 따른 종전 대치에 관한 조치
-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 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행위제한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 라 상생협력지구로 고시된 지

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상 생협력지구의 지정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의6(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및 사용) 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상생협력계획에 따라 개발사 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 3.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 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4.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위한 사업
- 5. 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 생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정부는 제2항제1호의 출연 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상생협력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상생협력계정으로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영하며, 그 밖에 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7(행위 등의 제한) 제20 조의2제5항에 따라 상생협력지 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상생협력 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 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 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 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생협력 지구의 지정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를 받을 필요가 없어 공사 또 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8(상생협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 정된 상생협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상생협력지구의 지 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 를 신청하는 경우
-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생 협력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한 경우
- 3. 상생협력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거 나 상생협력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지구 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등) ① (생략)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② ------항을 심의한다.
- 1. ~ 7. (생략)
-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u><신 설></u>

- 1. ~ 7. (현행과 같음)
-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 8. 상생협력지구의 지정 및 지 정 해제에 관한 사항
 - 9.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